



제2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제12차 조정회의 개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7월 6일 제1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▣ 제2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▣

지난 6월 30일 제1기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하여 제2기 협의회를 구성하였다.

이번 협의회 구성에 따른 조정위원들의 큰 변동은 없으며,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장으로는 현 법무법인 세종 부설 시장경제연구원 대표인 전임 신무성 위원장이 그대로 연임되었다.

제2기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며, 당 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.

▣ 제12차 조정회의 ▣

◆ 조정종료(취하)

- ▶ 르메이에르건설(주) 등 18개 업체에 대한 분쟁
 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 후 신고인들의 신고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.

◆ 조정불성립

- ▶ 부웅건설(주) 등 8개 업체에 대한 분쟁
 -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고, 사건이첩 요구 및 조정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조정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첩 함.

◆ 조정불개시

- ▶ 상수종합건설(주) 등 11개 업체에 대한 분쟁
 - 당사자 요건결여 및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불개시 처리함.